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9,573,583	17,087,207
일반회계	528,194,733	15,845,842
특별회계	41,378,850	1,241,366
공기업특별회계	7,872,607	236,178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872,607	236,178
기타특별회계	33,506,243	1,005,187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71,061	44,13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4,722	24,74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37,794	76,13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80,119	20,404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1,903,972	357,11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053,778	211,613
수질개선 특별회계	9,034,797	271,04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79,16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29,59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